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81호

도시관리계획(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06호(2023. 3. 30.)로 결정(변경)된 “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7월 17일
서울특별시

I. 결정(변경) 취지

도시계획시설(공원)이 실효된 한남근린공원 부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관리하고자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.

I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	용산구 한남동 일원	307,606	증) 28,790	336,396	서고387호 ('09.10.01)	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사유서

구분	위치	면적(㎡)	변경사유
변경	용산구 한남동 일원	307,606 → 336,396	- 도시계획시설(공원)이 실효된 한남근린공원 부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·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 - 위치 : 한남동 670 일대 - 면적 : 28,790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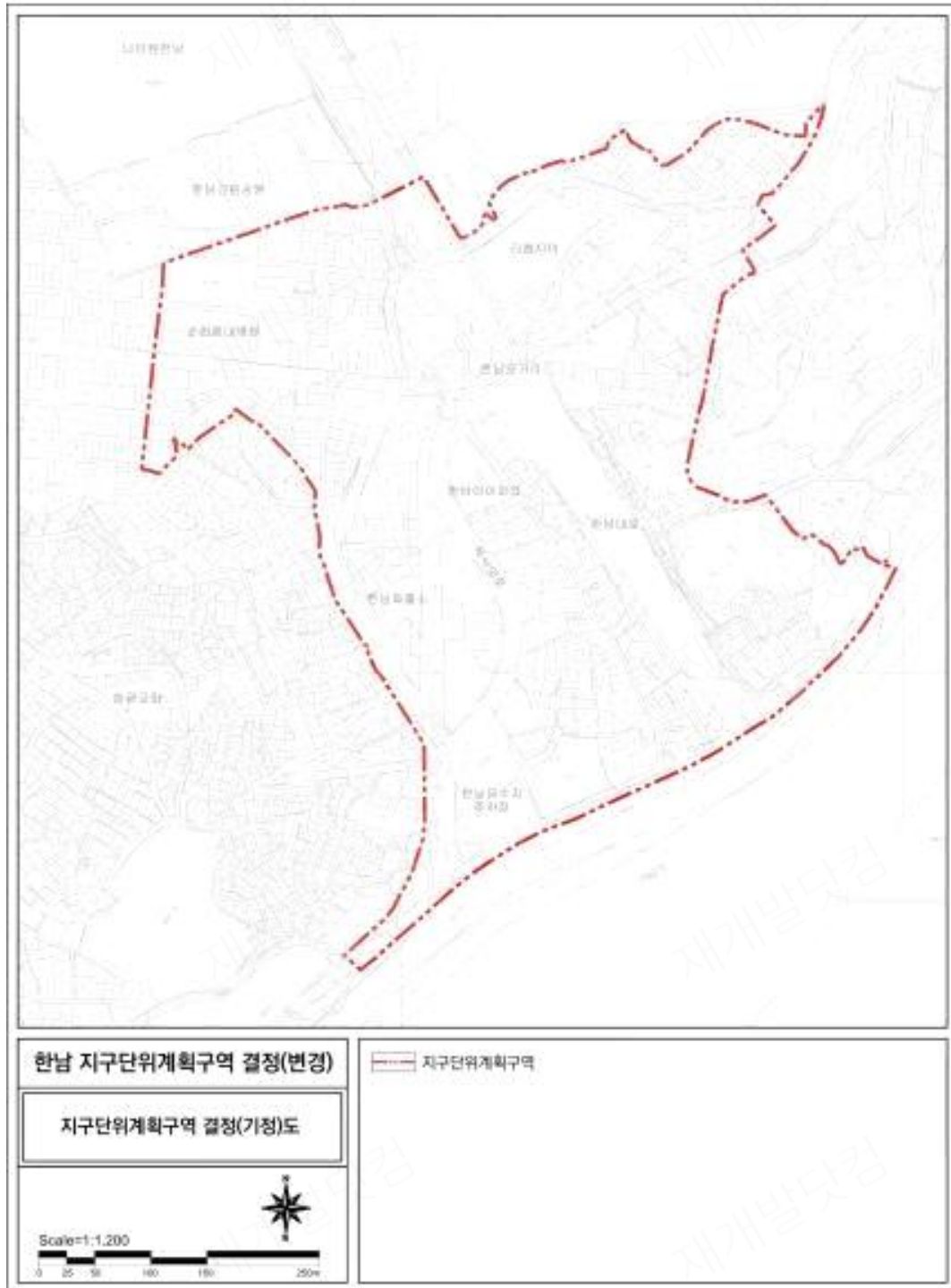
III. 관련도면 : 붙임 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)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IV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☎02-2133-8382)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(☎02-2199-7413)에 비치·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 및 서울도시공간포털(<http://urban.seoul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기정)도

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도

